

食品衛生法の 變遷過程

— 制定 및 改正經緯 —

韓國食品研究所 食品研究部

1. 食品衛生法の 制定經緯

우리나라의 식품위생행정은 1945년 해방 전 일제시대에는 취체단속을 위주로 한 경찰행정기구에서 담당하였으며, 따라서 당시의 법규도 “음식물, 기타 물품취급에 관한 법률”, “牛乳業取締規則” 등 잡다한 일제의 규정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였다. 그러다가 해방후 미군정을 거쳐 우리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일반 보건행정의 위생기구로 그 업무담당이 이관된 후에도 계속 일제시대 또는 미군정시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행정을 집행하여 오다가 5.16후 구법정리의 일환으로 비로소 통일된 單一法律體制로 정비된 식품위생법이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7호로 제정 공포되었고 그후 7회에 걸쳐 改正한 바 있으며, 이 法律의 施行을 위한 具體的 節次, 基準등을 定하고 있는 下位法令으로서 同法 施行令(大統領令)과 同法 施行規則(保健社會部令)이 制定되어 數次에 걸쳐 改正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 提案日字 : 1961.12.27

나. 提案者 : 文教社會委員長

다. 本會議議決日 : 1962. 1.18

라. 公布日 및 公布番號 : 1962. 1.20 法律第1007號

마. 審議經過

國家再建最高會議 第5次 常任委員會 (1962. 1.18) 上程 議決

바. 提案理由

이 法案은 舊法令整理事業의 一環으로서 食品에서 發生하는 衛生上の 危害防止와 食品營養의 質的向上을 圖謀함으로써 國民保健의 向上과 增進에 寄與케 하기 위하여 新法을 制定하려는 것임.

사. 主要骨子

- (1) 이 法에 依한 用語(食品, 添加物, 化學的合成品, 器具, 容器, 包裝等)에 대하여 各各 그 定義를 規定함(第2條)
- (2) 腐敗, 變質, 未熟 또는 病院微生物에 依하여 汚染되었거나 其他 人體의 健康을 害할 憂慮가 있는 食品 또는

添加物은 販賣, 使用, 調理등을 못하도록 함(第3條).

- (3) 保健社會部長官이 定하는 化學的合成品以外의 化學的合成品은 이를 식품의 添加物로 使用하거나 또는 이를 含有한 製劑 및 食品은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 輸入, 加工, 貯藏, 陳列 또는 使用하지 못하도록 함(第5條).
- (4) 保健社會部長官은 國民保健上의 見地에서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添加物의 製造, 加工, 使用, 調理 및 保存의 方法에 관한 基準과 그 成分에 관한 規格을 定할 수 있도록 함(第6條).
- (5) 有毒 또는 有害物質이 含有되었거나 附着되어 人體의 健康을 害할 憂慮가 있는 器具 및 容器, 包裝은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輸入 또는 使用하지 못하도록 함(第7條).
- (6)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 道知事는 國民保健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 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 包裝의 製品에 관하여 必要한 檢査를 할 수 있도록 함(第12條).
- (7) 食品, 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 包裝에 관하여 國民保健에 危害를 끼칠 憂慮가 있는 虛偽標識을 하거나 其他 誇張標識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第10條).
- (8) 乳製品, 化學的合成品인 添加物 其他 閣令이 定하는 食品 및 添加物의 製造 또는 加工業者는 그 製品 또는 加工을 衛生的으로 管理시키기 위하여 그 設備마다 專任의 食品衛生管理人을 두도록 함(第19條).
- (9) 食品 또는 添加物을 採取, 製造, 加工,

調理, 貯藏하거나 販賣하는 營業에 從事하는 者는 健康診斷을 받아야 하며 健康診斷結果 國民保健에 危害를 끼칠 疾病이 있다고 認定되는 者는 그러한 營業에 從事하지 못하도록 함(第20條).

- (10) 閣令이 定하는 飲食店과 集團給食所에는 飲食의 調理를 專擔하는 調理士를 두어야 하며 調理士는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의 免許를 받도록 함(第27條, 第29條)
 - (11) 閣令이 定하는 集團給食所에는 飲食의 營養에 관한 指導를 하는 營養士를 두어야 하며 營養士는 保健社會部長官의 免許를 받도록 함(第28條, 第30條).
 - (12) 玩弄品은 乳幼兒의 健康에 重大한 關係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食品에 관한 規定을 準用시키도록 함(第40條)
- 아. 초안작성 : 보건사회부, 방역국 위생과

2. 食品衛生法의 改正經緯

가. 1次 改正(案)

- (1) 提案日字 : 1965. 7.13
- (2) 提案者 : 申洞植議員外 11人
- (3) 審議經過
第53回 國會(定期會) 第3次 保社委員會(1965.10.19) 上程
第60回 國會(臨時會) 第1次 保社委員會(1967. 2.28) 議決
- (4) 提案理由
現行法의 未備點과 非現實인 條文을 改正하고 事實上 設置 運營中인 同業組合·協會등을 法制化하여 本法 運營上의 隘路點을 是正하고자 함.
- (5) 主要骨子
(가) 食品과 藥品과의 混沌許可됨을 是正

하기 위하여 “特殊營養食品”의 標示許可制를 實施케 하였음(第9條 標示基準)

(ㄴ) 食品衛生法 第24條 또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停止 또는 許可取消處分을 하였을 때 違法者 再許可의 不許措置 規定이 없으므로 同一人이 同一場所에서 再營業 申請의 不許를 規制하며 處罰規定을 強化함(第23條 營業許可의 制限).

(ㄷ) 食品衛生關係業者의 同業組合·協會등을 構成케 하여 行政業務遂行에 協助케 하고 施設의 自律的인 向上 適正料金の 自律的 規制등을 期할 수 있도록 함(第41條의2. 同業組合).

(6) 기타사항 : 1967. 2.28. 廢棄

나. 1次 改正

(1) 提案日字 : 1967. 2.28.

(2) 提案者 : 保健社會委員長

(3) 本會議議決日 : 1967. 3.10.

(4) 公布日 및 公布番號 : 1967. 3.30. 法律 第1921號

(5) 審議經過

第60回 國會(臨時會) 第1次 保健社會委員會(1967. 2.28) 上程·議決

第60回 國會(臨時會) 第9次 本會議(1967. 3.10) 上程·議決

(6) 提案理由

現行法の 未備點을 補完하고 同業組合·協會등의 法制化 및 罰則을 強化하여 食品衛生管理에 適正을 기하고자 申洞植議員外 11人이 提案한 改正案을 廢棄하고 代案을 提案하는 것임.

(7) 主要骨子

(가) 特殊營養食品의 標示許可制를 規定함(第9條 標示基準 및 特殊營養食

品の 標示).

(나) 違法者의 再許可의 不許可措置規定이 없으므로 同一人이 同一場所에서 再營業申請의 不許期間을 規制하는등 處罰規定을 強化함(第23條의2 營業許可의 制限).

(ㄷ) 關係業者의 組合·協會등을 構成케 하여 行政業務遂行에 協助케 하고 施設의 自律的인 向上 適正料金の 自律的 規制 등을 期할 수 있도록 함(第41條의2 同業組合).

다. 2次 改正(案)

(1) 提案日字 : 1969. 7.14.

(2) 提案者 : 政府

(3) 委員會議決日 및 處理結果 : 1970.12.15, 修正議決

(4) 審議經過

第72回 國會(定期會) 第7次 保健社會委員會(1969.12.19) 上程·小委員會 構成

第75回 國會(定期會) 第15次 保健社會委員會(1970.12.15) 議決

(5) 提案理由

現行 食品衛生法중 食品등의 質的保障 및 衛生上 危害防止에 따른 販賣禁止食品을 補強하기 위하여 偽裝食品등을 추가함으로써 食品의 品質 및 衛生防止策에 主力하고 일부 業種에 대한 許可權의 일부를 一線 保健所長에게 委任할 수 있게 하여 食品行政을 各々 委任받은 許可權者의 責任行政으로 하려는 것임.

(6) 主要骨子

(가) 販賣禁止品目에 偽裝食品을 追加함(第3條 販賣禁止)

(나) 誇大廣告禁止規定을 新設함(第10條 虛偽標識 및 誇大廣告禁止)

(다) 食品檢査에 있어서 再檢査制度를
등(第17條의2 再檢査 등).

(라) 行政改革調查委員會의 建議에 따라
一部 許可事項을 申告事項으로 함
(第23條 許可制限)

(7) 修正事項(委員會)

(가) 修正理由

本法 本來의 目的遂行上 緊要한 事
項을 追加함이 妥當하다고 思料되
므로 修正案을 提案하는 것임.

(나) 修正主要骨子

① 非現實의인 食品의 營業類型上
運搬과 輸出을 插入(第2條 定義)

② 許可를 받아야 할 業種의 定義·
分類 및 營業施設等級을 保健社
會部令으로 定하도록 함(第22條
施設基準).

③ 食品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保
健社會部長官·서울市長·釜山市
長·道知事의 許可를 받도록 함
(第23條 營業許可).

(8) 기타사항 : 1971. 6.30 임기만료로 인
한 폐기

라. 2次 改正(案)

(1) 提案日字 : 1971.12.15.

(2) 提案者 : 政府

(3) 提案理由

現行 食品衛生法上의 營業의 範圍를
輸出·運搬등에 까지 擴張 監督 또는
團束에 관한 規制를 보다 더 強化함
으로써 國民保健에 直結되는 不正·
不良食品의 根絶에 寄與하고자 하는
것임.

(4) 主要骨子

(가) 食品營業의 範圍를 輸出·運搬등에
까지 擴大함(第2條 定義).

(나) 人體의 健康에 直接 有害한 것이

아니더라도 食品營養의 質的向上을
期하기 위하여 그 固有價値를 잃게
된 食品등도 販賣할 수 없게 함(第
3條 販賣禁止).

(다) 誇大廣告禁止制度를 新設함(第10條
虛偽表示 및 誇大廣告의 禁止).

(라) 檢査 또는 實驗結果에 대한 再檢査
制度를 新設함(第17條의2 再檢査).

(마) 食品衛生管理人和 食品 또는 添加
物의 製造·加工業者에게 衛生管理
및 品質管理

(바) 營業施設의 衛生等級基準을 保健社
會部令으로 定하도록 함(第22條 營
業의 種類와 施設 및 衛生等級基準)

(사) 蓄産物加工處理法·水産業法 및 酒
稅法에 의하여 許可 또는 免許를
받은 營業者가 이 法에 違反한 때
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은 그 許可 또
는 免許官廳에 取消등을 要求할 수
있게 함(第26條의2 營業許可등의
取消要請)

(5) 기타사항 : 非常國務會議에 移管

마. 2次 改正

(1) 提案日字 : 1973. 2. 2

(2) 提案者 : 大統領

(3) 本會議議決日 : 1973. 2. 2.

(4) 公布日 및 公布番號 : 1973. 2.16. 法
律 第2532虎

(5) 審議經過

第7回 非常國務會議(1973. 2. 2) 上程·
議決

(6) 提案理由

現行 食品衛生法上의 營業의 範圍를
運搬등에 까지 擴張하고 監督 또는
團束에 관한 規制를 보다 더 強化함
으로써 國民保健에 直結되는 不正·
不良食品의 根絶에 寄與하고자 하는

것임.

(7) 主要骨子

- (가) 食品營業의 範圍를 運搬등에 까지 最大限으로 擴大함(第2條 定義).
- (나) 人體의 健康에 直接 有害한 것이 아니라도 食品營養의 質的向上을 期하기 위하여 그 固有價値를 잃게 된 食品등도 販賣등을 할 수 없도록 함(第3條 販賣禁止).
- (다) 誇大廣告禁止制度를 新設함(第10條 虛僞表示 및 誇大廣告의 禁止).
- (라) 檢査 또는 實驗結果에 대한 再檢査制度를 新設함(第17條의2 再檢査).
- (마) 食品衛生管理人和 食品 또는 添加物의 製造·加工業者에게 衛生管理 및 品質管理등에 관한 義務를 規定함(第19條의2 品質管理 및 報告).
- (바) 營業施設의 衛生等級基準을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도록 함(第22條 營業의 種類와 施設 및 衛生等級基準)
- (사) 不良食品에 대한 押留를 할 수 있도록 함(第24條 廢棄處分).
- (아) 無許可食品 및 그 製造·加工에 使用된 機具를 押留 廢棄할 수 있도록 함(第24條 廢棄處分 등).
- (야) 畜產物加工處理法, 水產業法 및 酒稅法에 依하여 許可 또는 免許를 받은 營業者가 이 法에 違反한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은 그 許可 또는 免許官廳에 取消등을 要求할 수 있도록 함(第26條의2 營業許可등의 取消要求).

바. 3次 改正

- (1) 提案日字 및 提案者: 1974.11.29, 政府
- (2) 本會議議決日: 1974.12. 1.
- (3) 公布日 및 公布番號: 1974.12.21 法律

第2701號

(4) 審議經過

第90回 國會(定期會) 第13次 保健社會委員會(1974.11.30) 上程·議決

第90回 國會(定期會) 第15次 本會議(1974.12. 1) 上程·議決

(5) 提案理由

食品 또는 添加物의 製造業등의 許可에 있어 施設의 規模가 큰 境遇에는 條件附로 許可할 수 있도록 하여 先施設 後不許可로 因한 申請人의 財産上의 損害를 未然에 防止하는 한편 食品製造 및 加工業이 發展함에 따라 그 製品이 漸次 多樣化하고 大量 生産化하는 實情에 비추어 食品의 衛生的인 取扱 및 製品의 徹底한 管理를 強化하여 食品으로 因한 衛生上의 危害防止와 食品의 安全性을 期하고자 하는 것임.

(6) 主要骨子

- (가) 食品 誇大包裝을 못하도록 함(第10條 虛僞表示등의 禁止).
- (나) 食品 또는 添加物의 製造業 등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營業許可에 있어서는 條件附로 許可할 수 있도록 함(第23條의2 條件附 營業許可)
- (다) 製造品目許可가 取消된 品目は 取消된 뒤 6日이 經過해야 다시 許可할 수 있도록 함(第23條의3 營業許可등의 制限).
- (라) 食品衛生上 危害가 發生하였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許可받은 營業者에 대하여 必要한 指導를 하거나 食品·添加物·器具·容器 또는 包裝의 原料製造方法·成分·配合比率 등에 대한 變更을 命할 수 있도록 함(第26條

施設의 改修命令등).

사. 4次 改正

(1) 提案日字 및 提案者 : 1976. 7.21, 政府

(2) 本會議議決日 : 1976.12.16.

(3) 公布日 및 公布番號 : 1976.12.31, 法律 第2971號

(4) 審議經過

第96回 國會(定期會) 第18次 保健社會委員會(1976.12. 3) 上程

第20次 保健社會委員會(1976.12.16) 質疑·小委員會 回附

第21次 保健社會委員會(1976.12.10) 小委審查報告·議決

第96回 國會(定期會) 第17次 本會議(1976.12.16) 上程·議決

(5) 提案理由

國民保健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食品添加物·器具·容器등은 保健社會部長官의 告示로서 그 基準과 規格을 定하도록 하고 其他의 食品·添加物·器具·容器등에 대하여는 製造業者로 하여금 自家品質基準과 規格을 定하여 關係機關의 檢定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食品등에 대한 品質管理의 效率化를 期하며 營養士 및 調理士에 대한 資格試驗制度를 採擇하여 그 資質向上을 圖謀하고 其他輸入 食品등에 대한 檢査強化등으로 食品衛生上의 危害防止에 萬全을 期하기 위하여 이 法을 改正하려는 것임.

(6) 主要骨子

(가) 食品·添加物·器具·容器등의 基準과 規格을 保健社會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고 其他의 食品·添加物·器具·容器등에 대하여는 關係機關의 檢定을 거쳐 自家品質基準과 規格을 定할 수 있도록 하며 輸

출을 目的으로 하는 食品등에 대하여는 輸入者가 要求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第6條 基準과 規格 第8條 基準과 規格)

(나) 輸入食品등에 대하여는 그 通關節次完了前에 必要한 檢査를 할 수 있도록 함(第15條 輸入申告).

(다) 自家品質管理狀態가 一定水準 以上인 營業所에 대하여는 臨檢·收去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第16條 臨檢·收去등)

(라) 公益上 또는 食品需給調節上 必要한 境遇에는 製造品目許可도 制限할 수 있도록 함(第23條의3 營業許可등의 制限).

(마) 公益上 또는 食品需給調節上 必要한 境遇에는 製造品目許可도 制限할 수 있도록 함(第23條의3 營業許可등의 制限).

(바) 製造品目許可를 받은 者가 2年以上 當該品目を 製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製造品目許可를 取消할 수 있도록 함(第25條 營業許可등의 取消).

(사) 調理士 및 營養士의 養成機關指定 制度를 廢止하고 資格試驗制로 함(第29條 調理士의 免許, 第30條 營養士의 免許).

(아) 中性洗劑에 대하여 表示基準 및 虛偽表示禁止規定을 準用하도록 함(第40條 玩弄品에 準用).

(7) 修正事項(委員會)

(가) 修正理由

原案에 依하면 調理士나 營養士의 免許는 學歷에 拘碍됨이 없이 機會均等하게 國家의 資格試驗에 의하여 資格을 取得하도록 하고 있는 바 學究的인 基礎素養이 別로 必要

없는 調理士의 境遇에는 別問題가 없으나 營養士는 相當水準의 基礎素養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므로 그 免許試驗에 應試資格의 制限規定을 두기위한 것임.

(나) 修正主要骨子

營養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專門學校·初級大學 또는 大學에서 關係專攻學科를 卒業한 者로서 營養士資格試驗에 合格한 후 保健社會部長官의 免許를 받도록 함(第30條 營養士의 免許).

아. 5次 改正

- (1) 提案日字 및 提案者: 1980.12.18.
- (2) 本會議議決日: 1980.12.26.
- (3) 公布日 및 公布番號: 1980.12.31. 法律 第3334號
- (4) 審議經過
國家保衛立法會議 第12次 經濟第2委員會('80.12.19) 上程·議決
國家保衛立法會議 第13次 本會議('80.12.26) 上程·議決
- (5) 提案理由
從來許可事項으로 되어있던 食品接客營業 또는 食品販賣業中 庶民生活과 密接히 관련이 있는 營業을 申告만으로서 行할 수 있도록 民願行政을 改善하고, 非現實的인 罰則을 現實化하려는 것임.
- (6) 主要骨子
 - (가) 販賣對象에서 除外되는 化學的 成品을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던 것을 保健社會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도록 함(第5條).
 - (나) 從來 許可制로 하던 營業의 一部를 申告制로 할 수 있도록 함(第23條).
 - (다) 食品을 製造·加工하는 營業者에

대한 營業許可의 規制를 할 때에는 事전에 當該營業者에게 出席을 要求하여 聽聞을 行하도록 함(第26條)

(라) 罰則을 現實에 맞도록 調整함(第43條, 第46條).

자. 6次 改正(案)

- (1) 提案日字 및 提案者: 1985.10. 2, 鄭始鳳 議員 外 20人
- (2) 審議經過
第129回 國會(臨時會) 第1次 保健社會委員會(1986. 4. 1) 上程·小委員會 第3次 保健社會委員會(1986. 4. 3) 小委審查報告·議決
- (3) 提案理由
不正·不良食品의 발호로 말미암아 國民保健이 일대 威脅을 받고 있는 가공할 現實狀況속에서 이같은 不正·不良食品을 根絶시킴으로써, 國民健康을 유지할 수 있는 制度的 位置를 強化하기 위하여 同法 改正案을 提案하는 것임.
- (4) 主要骨子
 - (가) 食品·添加物 이와 관련된 器具와 容器的 製品檢査를 政府 任意事項에서 年 1回以上 強制事項으로 義務化시킴(案 第12條).
 - (나) 이 法을 違反한 營業者에 대해서는 모두 告發措置함으로써 司法處分(懲役 또는 罰金)을 받도록 함(案 第26條).
 - (다) 製品檢査, 品質向上, 施設改善, 衛生管理의 實效性을 提高시키기 위하여 관련된 罰則을 新設 또는 強化함(案 第43條 내지 第46條).
- (5) 主要論議事項(小委員會)
同 改正法律案의 內容中 違反營業者에 대한 罰則의 強化에 관한 事項은

政府가 提案한 食品衛生法改正法律案에 反映되어 있어 問題가 없으나, 食品·添加物과 이와 관련된 器具·容器에 대한 製品檢査를 年 1회이상 義務化하도록 하는 事項에 대하여 현재 30萬餘種에 達하는 食品等 製造品目을 國立保健院과 各市·道에 있는 13개 保健研究所의 人力과 裝備로서는 實效性있는 檢査가 不可能하므로 그것을 여기에 明文化하여 規定할 경우 오히려 또 다른 問題點이 發生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規定을 이 法案에 明文化시키는 대신에 品目製造許可時 許可基準과 自體檢査機能을 強化하고 流過程에서의 事後管理를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所期의 目的이 達成될 수 있도록 政府가 法施行過程에서 만한의 措置를 取할 것을 政府側에 促求하였으므로 同 改正法律案은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함.

(6) 參考事項

第129回 國會(臨時會) 製9次 本會議(1986. 4. 8)에서 金鎔采 議員(국민당)이 本 改正法律案의 廢棄에 대한 議事進行發言이 있었음.<第129回 國會(臨時會) 第9次 本會議會議錄 p.20參照>

차. 6次 改正

- (1) 提案日字 및 提案者: 1985.11.22, 政府(全文改正)
- (2) 本會議議決日字: 1986. 4. 8.(修正議決)
- (3) 公布日 및 公布番號: 1986. 5.10, 法律 第3823號
- (4) 審議經過
第129回 國會(臨時會) 第1次 保健社會委員會(1986. 4. 1) 上程·

小委構成·回附

(1986. 4. 2) 小委員會 審查 第3次 保健社會委員會(1986. 4. 3) 小委審查報告·議決 第129回 國會(臨時會) 第9次 本會議(1986. 4. 8) 上程·議決

(5) 提案理由

오늘날 國民食生活에서 加工食品이 차지하는 比率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加工食品이 多樣하게 開發되어 大量으로 生産·流通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食品의 安全性과 質的 向上등에 대한 要求가 增大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社會的 要求에 副應할 수 있도록 加工食品에 대한 管理를 強化하고 現行 規定上 일부 미비한 사항을 整備하여 食品衛生水準의 向上과 國民保健의 增進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6) 主要骨子

- (가)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添加物등은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맞도록 製造·加工·使用·調理하도록 하고 營業을 하는 者가 이에 위반하는 때에는 是正命令을 할 수 있도록 함(案 第3條 및 第55條).
- (나) 販賣禁止對象食品·添加物에 無許可營業者가 製造·加工한 것과 品目製造許可없이 製造한 것을 추가함(案 第4條).
- (다) 市·道 保健研究所와 같은 公共機關에 한하여 食品衛生檢査機關으로 지정될 수 있던 것을 民間機關등도 지정될 수 있도록 함(案 第18條).
- (라) 食品·添加物등을 製造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그가 製造하는 製品이 基準·規格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檢査하도록 함(案 第19條).

- (마) 營業許可制限對象에 禁治産 또는 破産의 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와 食品衛生法 위반으로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한 者등을 추가하고 營業申告制限事由를 새로 둠(案 第24條).
- (바) 讓渡·相續등에 의하거나 強制競買등에 의하여 營業施設을 引受한 者는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하도록 하고 이를 1月 이내에 申告하도록 함(案 第25條).
- (사) 食品接客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와 食品衛生管理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 사전에 衛生에 관한 教育을 받도록 함(案 第27條第2項).
- (아) 食品衛生管理人을 選任하거나 解任하고자 하는 때에는 申告하도록 함(案 第28條第4項).
- (자) 共益上 또는 선량한 風俗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食品接客營業者의 營業時間 및 營業行爲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案 第30條).
- (차) 食品接客營業者는 傳染性疾患者 또는 風紀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者의 營業施設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案 第33條).
- (카) 就業中인 調理士 및 營養士에 대하여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補修教育을 命할 수 있도록 함(案 第40條).
- (타) 食品營業 同業者組合 및 그 聯合會에 自律指導員을 둘 수 있게 함(案 第51條).
- (파) 食品工業에 관한 調査·研究등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食品工業協會를 두도록 함(案 第52條 내지 第54條).

- (하) 品目製造許可取消 및 製造停止制度를 새로 마련함(案 第59條).
- (기) 營業을 讓受한 者등은 讓受전의 營業者에게 행하여진 行政處分의 效果를 承繼하도록 함(案 第61條).
- (니) 無許可營業者, 許可가 取消된 者 또는 營業所閉鎖命令을 받은 者가 계속하여 營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營業所를 閉鎖하기 위하여 施設物 기타 營業에 사용하는 器具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封印등 直接強制措置를 행할 수 있도록 함(案 第62條).
- (디) 營業停止에 갈음하여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도록 함(案 第65條)
- (리) 集團給食所를 設置·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申告하도록 함(案 第69條).
- (미) 營業者의 營業施設改善을 위한 融資事業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食品振興基金을 새로 設置함(案 第71條)
- (비) 罰則을 上向調整하여 食品衛生事犯을 嚴罰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가벼운 行政秩序 위반에 대하여는 過怠料에 處하도록 함(案 第13章).

(7) 修正事項(委員會)

(가) 修正理由

營業許可에 있어서 施設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許可를 制限하도록 하고 있으나 施設을 갖출 것을 條件으로 하는 條件附許可의 경우에는 營業許可의 制限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罰則適用에 있어서 申告營業과 許可營業을 區分하였으며 不必要한 事項과 一部字句를 整理하려는 것임.

(나) 修正主要骨子

- ① 條件附 營業許可의 경우는 營業許可制限對象에서 除外함(案 第24

條).

- ② 名稱使用禁止에 調理士를 追加함(案 第39條).
- ③ 罰則規定중 申告營業과 許可營業의 違反事項에 대한 罰則適用區分을 明確히 하고, 附則중 不必要한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規定을 削除함(案 第75條第4號, 第77條第6號 및 附則 第7條).

카. 7次 改正

- (1) 提案日字 및 提案者: 1988.12. 3, 政府
- (2) 本會議議決日: 1988.12.16.
- (3) 公布日 및 公布番號: 1988.12.31, 法律 第4071號
- (4) 審議經過
第144回 國會(定期會)
第10次 保健社會委員會(1988.12. 9)
上程·小委構成, 回附
第 1次 小委員會(1988.12.10)
第 2次 小委員會(1988.12.13)
第12次 保健社會委員會(1988.12.13)
小委審查報告·議決
第16次 本會議(1988.12.16) 上程·議決

(5) 提案理由

加工食品의 衛生管理水準이 漸次 향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製造加工業者의 自律性 및 相互競爭的인 여건을 造成하여 加工食品의 多樣化와 品質 向上을 誘道하는 등 食品衛生制度를 合理的으로 補完하려는 것임.

(6) 主要骨子

- ① 食品을 製造하는 者에 대하여 自律性과 競爭的인 여건을 造成하기 위하여 現行 品目製造 許可對象의 일부를 申告對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食品營業許可 對象業種중 일부를 申告對象業種으로 調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根據를 마련함(案 第22條第2項 및 第5項).

- ② 종전에는 食品同業者組合을 原則的으로 市·道를 單位로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設立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業種別로 保健社會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設立하도록 함으로써 全國規模의 組合設立을 誘道하여 教育·研究등 組合의 事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案 第44條第3項 및 第5項).
- ③ 종전에는 營業停止處分의 경우에만 이에 같음하여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品目製造停止處分의 경우에도 이에 같음하여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도록 하는등 行政處分의 公平性과 實效性을 도모함(案 第65條第1項).
- ④ 地方自治團體가 徵收하는 課徵金을 財源으로 市·道에 食品振興基金을 設置하도록 하여 당해 市·道에 있어서의 食品衛生向上을 위한 事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案 第65條 第4項·第71條第1項).

※ 附帶意見

이 法律案의 處理와 關聯하여 政府側에서는 同業者組合의 設立形態에 관한 同業者間의 異見에 대하여 行政力을 발휘하여 年內에 원만히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타. 8次 改正

- (1) 公布日 및 公布番號: 1991.12.14, 法律 第4432號

(2) 提案理由

衛生接客業所와 不正·不良食品에 대한 規制를 強化하고, 食品의 衛生水準向上을 위하여 일부 制度的 未備點을 개선·補完하려는 것임.

(3) 主要骨子

- ① 輸入이 금지된 食品 또는 輸入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輸入한 食品을 販賣目的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② 飲用に 제공할 目的으로 營業許可를 받지 아니한 일반 地下水·地表水 등의 물을 容器이 담아 販賣하는 行위를 規制할 수 있도록 함.
- ③ 人參製品을 輸出하는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保健社會部長官이 지정한 者의 추천을 받도록 하여 人參製品의 品質을 보전하고 過當競爭을 방지하도록 함.
- ④ 市·道知事의 權限委任으로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하고 있는 食

品接客業에 대한 營業許可·行政處分등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權限으로 함.

- ⑤ 營業許可가 取消되었거나 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者에 대한 營業許可 및 申告制限期間을 1年에서 2年으로 연장함.
- ⑥ 現行 韓國食品工業協會 附設 “韓國食品研究所”를 “韓國食品衛生研究院”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獨立法人으로 設立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⑦ 課徵金의 上限金額을 2千萬원에서 5千萬원으로 上向調整함.
- ⑧ 食品振興基金을 食品衛生教育·研究機關의 育成·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韓國食品研究所 刊 「食品衛生法 變遷史 (1991)」중 발췌,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改正經緯는 다음호에 계속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노는만큼 잃게 되고
일한만큼 얻게 된다